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한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 범위 축소〉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79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1.
3. 회부연월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임. 그러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240mm는 60km, 300mm는 200km 이상으로 발전했으나, 현행 보호구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 역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등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함.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음.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어렵게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상황임.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 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 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 목 및 같은 조 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한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25킬로미터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로 축소하고, 민간인통제선의 지정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이내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5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한보호구역	2. -----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u>25킬로미터</u>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 <u>10킬로미터</u> ----- -----.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② ----- ----5킬로미터----- -----.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군사분계선¹⁾ 이남(以南) 10km의 범위 이내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하고 민간인통제선의 이북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²⁾, 실제 지정은 아래 표와 같이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10km 범위내에서 지역별로 달리 하고 있음.

[지역별 민간인통제선 현황]

강화·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1~3km	1.5~10km	3.5~7km	3~9km	7~10km	5.5~10km	7.5~10km

1) 전쟁, 또는 교전 당사국 사이에서 군사적 행동의 경계선으로 삼은 선. 한반도에서는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정전 협정에 따라 해당 시점에 교전이 멈춘 지점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약 240km 거리를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였음. 휴전선이라고도 함.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생략)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마. (생략)

□ 2007년 동 법 제정³⁾ 당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있어,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⁴⁾(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함으로써 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확대와 주민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였음.

[통제보호구역 지정 기준 연혁⁵⁾(군사분계선 이남 거리)]

구 분	'72년	'81년	'97년	'07년
통제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27km	20km	15km	10km

□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물 신축 금지, 복잡한 출입절차 등 여전히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의안번호 제176289호, 정부 제출, 2007. 3. 27.)은 작전환경 변화 및 원활한 작전운용을 위해서 보호구역의 범위와 행위규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법률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통합하여 발의, 2007. 12. 21. 공포되었음.

4)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통제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민간인 통제선은 '81년도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20km 이내로 설정된 이후 '97년도에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으로 15km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음.

5) 1972.12.26.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휴전선으로부터 27km) 설정
1981.12.31.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최초). 민통선 범위(휴전선 남방 5km~20km) 설정
1997.1.13. 「군사시설보호법」 개정(1차 변경). 민통선 군사분계선 남방 20km→15km 설정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2차 변경). 민통선 군사분계선 남방 15km→10km 설정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할 경우 산악지형이 많은 접경지역의 특성 상 군사작전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재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⁶⁾을 검토 중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9

6) 국방부가 2026년 1월 14일 발표한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제한 보호구역을 ‘벨트형’에서 ‘박스형’으로 조정하고 민간인통제선을 북상시킬 계획임